

학보사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사는 대신대학교(이하 “본교”라 약칭한다)부속 “대신대학교 학보사”(이하 “본사”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사는 본교의 공기(公器)로서

1. 건전하고 참신한 학내 여론의 창달(暢達)을 기(期)함과 아울러
2. 전문지식과 교양증진을 도모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대신인의 화합과
3. 본교의 신학노선과 학풍을 진작(振作)시키고 선교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대신대학교” 발간
2. 본교 및 본사와 관련된 학술 문화 활동 개최
3. 기타 본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

제4조 (위치) 본사는 본교 내에 둔다.

제2장 조직 및 사무

제5조 (조직) 본사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을 둔다.

1. 사장(1인)
2. 주간(1인)
3. 운영위원(5인 이하)
4. 편집 지도교수 및 감사(1인)
5. 학생 편집국장(1인)
6. 논설위원(약간명)
7. 각 부장(약간명)
8. 학생기자(7인 이하)

제6조 (사장) 본사의 사장은 본교 총장이 당연직으로 본사의 발행인이 되며 본사의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제7조 (주간) ① 본사의 주간은 본교 조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사장이 위촉한다.

② 주간은 본보(本報)의 편집인 겸 주간이 되며 본사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제8조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주간과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주간의 제청으로 사장이 임명하는 4인 이하로 구성하며, 본사 운영 전반을 심의한다.

제9조 (편집지도교수 및 감사) 사장이 운영위원 가운데 주간의 제청으로 1인을 편집지도 교수 및 감사로 위촉하며, 학보편집 지도 및 감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 (학생편집국장) ① 3학년 기자들 중 기자들의 추천과 주간의 제청으로 사장이 임명한다(단, 3학년 기자가 없을 시에는 2학년 기자들 중에서 임명한다).
② 학생 편집국장은 본사의 행정적 업무 및 신문제작에 관한 편집기획을 편집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총괄하고 기자들의 대표가 된다. 그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제11조 (논설위원) 논설위원은 주간의 제청으로 사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각 부장) 각부의 부장은 학생 기자들 가운데 학생 편집국장의 제청으로 주간이 임명한다.

제13조 (학생기자) ① 수습기자는 재학생들 중에서 입사시험을 거쳐 공개 채용을 하되 학생 편집국장의 제청으로 주간이 임명한다(컷과 사진부는 입사 시험없이 특채로 한다).

② 학생기자는 수습기자들 중 6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자로서 각 부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 편집국장이 제청하고 주간이 임명한다(단, 재학생들 가운데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학생 편집국장의 제청으로 주간이 학생기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③ 학생 기자의 임기는 최종학년 1학기말로 한다.

제3장 회 의

제14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주간이 위원장이 되며, 본사의 예산, 결산, 사규(社規)의 개폐 및 운영에 관한 전반을 심의 결정한다.

가) **제15조 (편집회의)** 편집회의는 주간과 편집지도교수 및 학생 편집국장 그리고 각 부장들과 편집 기자들로 구성한다. 편집회의는 편집지도교수의 주재로

본보(本報) 제작 편집 및 배포에 관한 모든 업무를 협의한다.

제16조 (시행세칙) 본 사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학생기자의 의무

제17조 (의무 및 자세) 기자는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에 전력을 기울이며, 기자의 신양 양심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 (동아리 가입) 기자는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없다.

제5장 재 정

제19조 (수입 자원)

본사의 재정은 본교의 지원금, 기부금, 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0조 (예산, 결산) 예산과 결산은 매 학년말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재정관련 주무 부서에서 이를 관할한다.

제6장 상 별

제21조 (감사) 자체정기 감사는 매 학기말에 실시한다.

제22조 (표창) 사장은 본사 발전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주간의 추천을 받아 표창할 수 있다.

제23조 (장학금 및 수당) 사장은 학생 편집국장, 각 부장 및 기자(수습기자 제외)들에게 장학금 및 수당을 지불할 수 있다. 단 장학금 및 수당에 관한 내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징계) 다음 사항을 위반하는 기자에게 임명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본교 학칙을 위반한 자
2. 업무상 기밀을 누설한 자
3. 사규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 고의 또는 과실로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

부 칙

1. 이 규정은 2001년 3월 일부더 시행한다.

학보사 규정 시행세칙

제1조 (원고) 본보에 게재되는 원고는 학내외 학술 논문, 학원 뉴스, 문예 작품, 시사성이 있는 논단, 국내외 학계 동향 등 학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본교 신학노선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원고 수집)

- ① 투고에 의한 원고 : 투고된 원고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 ② 청탁에 의한 원고 : 편집회의에서 결정한 원고의 제목 및 내용을 청탁하여 게재한다.

제3조 (원고 검사) 원고는 편집지도교수와 학생 편집국장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에 각자 서명을 한다.

제4조 (편집회의) 편집지도교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편집회의를 소집하며 각 면마다 청탁할 원고의 제목과 내용과 청탁 대상자를 결정하고, 제출된 원고와 편집계획에 따라 편집내용을 확정하며, 차기에 발간되는 학보편집 계획안을 심의 결정한다.

제5조 (송고(送稿)) 편집이 완료되면 주간의 승인을 얻어 인쇄소로 원고를 보낸다 (단, 주간의 유고 시에는 편집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조판) 각 면 담당 학생편집위원은 식자(植字)된 원고의 교정을 학생편집국장과 함께 끝낸 후(조판을 완료하고 조판된 원고는 교정을 끝낸 후), 편집지도교수의 최종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인쇄) 지형(紙型)을 끝낸 후 편집지도교수가 검인한 후 인쇄에 회부한다.

제8조 (배포) 인쇄된 학보는 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배포한다.

제9조 (원고료) 게재된 원고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는 매 학년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1.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